목포시 고시 제2025-43호

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

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33조에 따라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5. 3. 17.

목 포 시 장

I. 산업단지 조성 개요 (변경)

1. **관리권자** : 목포시장 (변경없음)
2. **관리기관** : 목포시장 (변경없음)
   가. 주소 :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 1188-2)
   나. 사업시행자 : 목포시장
3. **조성목적** (변경없음)
   가. 「세라믹 종합 지원센터」를 구심점으로 세라믹산업의 거점화에 필요한 산업용지 확보
   나. 지역사업구조 개선과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
   다. 국내·외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로 서남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4. 조성기간 (변경없음)

○ 2008년 ~ 2026년

5. 사 업 비 : 217억원(시비 119, 지방채 98) (변경없음)

6.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
가. 위치 :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618-64 일원

나. 면적 : 116,361.1㎡

7. 조성과정 (변경)

○ '08. 3. : 세라믹배후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준공
○ '09. 6. 5. :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
○ '10. 11. 8. :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
○ '10. 12. 20. : 실시계획인가 고시
○ '11. 7. 22. : 투융자심사 승인
○ '12. 1. 5. : 본공사 발주
○ '12. 2. 27. : 책임감리용역 착수
○ '12. 12. : 노출암 깨기
○ '13. 1. 25. :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(목포시 고시 제2013-132)
○ '14. 12. :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
○ '16. 7. 4. :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(목포시 고시 제2013-132)
○ '18. 12. 17. :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(목포시 고시 제2018-191)
○ '21. 2. 1. :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(목포시 고시 제2021-20)
○ '24. 11. 4. :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(목포시 고시 제2024-160)
○ '24. 11. 8 :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(목포시 고시 제2024-168호)
○ '25. 3. 10. :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(목포시 고시 제2025-37)

8. 분양계획 (변경)

<기존>

구 분	총면적(㎡)	분양가능면적(㎡)			조성기간	조성기관
		계	분 양	미분양		
계	116,361.1	90,110.8	35,988.1	54,122.7	2008 ~ 2026	목포시
산업시설	75,581.4	75,581.4	21,458.7	54,122.7		
지원시설	14,529.4	14,529.4	14,529.4	-		
공공시설	15,585.4	-	-	-		
녹지시설	10,664.9	-	-	-		

<변경>

구 분	총면적(㎡)	분양가능면적(㎡)			조성기간	조성기관
		계	분 양	미분양		
계	116,361.1	90,111.7	77,591.4	12,520.3	2008 ~ 2026	목포시
산업시설	75,582.3	75,582.3	63,062.0	12,520.3		
지원시설	14,529.4	14,529.4	14,529.4	-		
공공시설	15,584.6	-	-	-		
녹지시설	10,664.8	-	-	-		

9. 입주계획 (변경)

<기존>

구 분	입주업체수(예정)		면 적(㎡)
	계	입주업체	
향후계획	37개사	37개사	75,581.4

※ 입주업체는 분양결과에 따라 필지 분할 또는 합병으로 변경될 수 있음

<변경>

구 분	입주업체수(예정)		면 적(㎡)
	계	입주업체	
향후계획	37개사	37개사	75,582.3

※ 입주업체는 분양결과에 따라 필지 분할 또는 합병으로 변경될 수 있음

10. 입지여건 (변경없음)

시 설 명	기반시설 현황(계획)
상 수	○ 계획 급수량 : 2,079.0㎥/일 (생활용수 : 64.8㎥/일, 공업용수 : 1,964.2㎥/일, 소화용수 : 50.0㎥/일) ○ 용궁배수지계통에서 삽진 일반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광역상수도에 D=150㎜관을 연결하여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
하 수	○ 계획 오수량 : 996.6㎥/일 (생활오수 : 51.5㎥/일, 공장폐수 : 945.1㎥/일) ○ 생활오수 : 단지내 생활오수를 직접 오수관에 연결하여 산정중계펌프장을 거쳐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함 ○ 공장폐수 : 각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지구내 오수관에 연결하여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함
폐기물처리	○ 본 산업단지 시설물 종업원 및 상근, 이용인구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각 시설물별로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 ○ 총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량을 제외한 양 1.30ton/일에 대하여는 종량제처리 및 위탁처리
통 신	○ 전화수요량(회선) : 86 ○ KT목포지사 및 KT전남본부와 협의하여 단지내 ONU(초고속망 공급장치 기계실)을 설치하여 공급
에 너 지	○ 열 수요량 : 269.392Gcal/년 · 목포도시가스와 협의하여 입주업체의 도시가스 사용시기에 맞춰 공급할 예정 ○ 전력 수요량 : 59,999MWh/년 · 한국전력 목포지점과 협의, 북항변전소에서 필요전력을 인입 공급계획
도 로	○ 서해안 고속도로 연장선상 도로와 300m 인접
항 만	○ 목포신항만 (목포대교 경유 8km)
철 도	○ 목포역부터 → 단지까지(3km)

Ⅱ.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(변경)

1. 기본방향 (변경없음)

가.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로 생산 활동 지원
나.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
다. 업종별 규모 및 배치기준에 입각하여 업종별 집단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집단배치

2. 관리면적 (변경)

<기존>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고
계	116,361.1	100	
산업시설용지	75,581.4	64.9	
지원시설용지	14,529.4	12.5	
공공시설용지	15,585.4	13.4	
녹지시설용지	10,664.9	9.2	

<변경>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고
계	116,361.1	100.0	
산업시설용지	75,582.3	64.9	
지원시설용지	14,529.4	12.5	
공공시설용지	15,584.6	13.4	
녹지시설용지	10,664.8	9.2	

3. 입주계획 (변경)

<기존>

가. 입주대상 업종

○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C23) 중 시멘트, 레미콘 관련 업종 제외
- 23111, 23112, 23119, 23121, 23122, 23129, 23191, 23192, 23199, 23211, 23221, 23222, 23229, 23232, 23239, 23312, 23321, 23323, 23992, 23999

○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; 의약품 제외(C20)
○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(C25)
○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
○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
○ 전기장비 제조업(C28)
○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

○ 식료품제조업(C10)
○ 섬유제품 제조업 ; 의복 제외(C13)
○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(C16)
○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
○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
○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
○ 기타 제품 제조업(C33)
○ 전문직별 공사업(F42)
  - 42137, 42138, 42139, 42201, 42202, 42203, 42204, 42209, 42311, 42312, 42321, 42322, 42411, 42412, 42420, 42491, 42492, 42499, 42500
○ 출판업(J58)
  - 58211, 58212, 58219, 58221, 58222
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J62)
○ 정보서비스업(J63)
○ 부동산업(L68)
  - 68111, 68112, 68119
○ 연구개발업(M70)
○ 전문 서비스업(M71)
  - 71310, 71391, 71392, 71393, 71399
○ 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)
○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M73)
※ 부동산 임대업(L6811)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와 목포시가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
○ 입주제한(신설)
  - 식료품제조업(C10) 중 도축업(c1011)
  - 생산공정상 악취 및 유해물질 배출로 대기·수질 등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
  -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시 사업계획서상에 당초 조사했던 폐수발생량보다 현격히 증가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을 감안,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
  - 안전 관련 법률(산업안전보건법,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위험물안전관리법 등)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인허가 사항 미신고 업체는 입주 제한

<변경>

가. 입주대상 업종

○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C23) 중 시멘트, 레미콘 관련 업종 제외

- 23111, 23112, 23119, 23121, 23122, 23129, 23191, 23192, 23199, 23211, 23221, 23222, 23229, 23232, 23239, 23312, 23321, 23323, 23992, 23999

○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; 의약품 제외(C20)

○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(C25)

○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

○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

○ 전기장비 제조업(C28)

○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

○ 식료품제조업(C10)

○ 섬유제품 제조업 ; 의복 제외(C13)

○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(C16)

○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

○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

○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

○ 가구 제조업(C32)

○ 기타 제품 제조업(C33)

○ 전문직별 공사업(F42)

- 42137, 42138, 42139, 42201, 42202, 42203, 42204, 42209, 42311, 42312, 42321, 42322, 42411, 42412, 42420, 42491, 42492, 42499, 42500

○ 출판업(J58)

- 58211, 58212, 58219, 58221, 58222

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J62)

○ 정보서비스업(J63)

○ 부동산업(L68)

- 68111, 68112, 68119

○ 연구개발업(M70)

○ 전문 서비스업(M71)

- 71310, 71391, 71392, 71393, 71399

○ 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)

○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M73)

※ 부동산 임대업(L6811)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와 목포시가 임대하는

경우에 한하여 허용

○ 입주제한(신설)

- 식료품제조업(C10) 중 도축업(c1011)
- 생산공정상 악취 및 유해물질 배출로 대기·수질 등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
-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시 사업계획서상에 당초 조사했던 폐수발생량보다 현격히 증가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을 감안,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
- 안전 관련 법률(산업안전보건법,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위험물안전관리법 등)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인허가 사항 미신고 업체는 입주 제한

나. 입주자격 (변경없음)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
○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,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○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·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)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

○ 입주업체가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(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)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○ 산업단지의 조성목적,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

다. 입주 우선순위 (변경없음)

○ 1순위 : 목포시와 MOU를 체결했거나 입주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입주 면적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

○ 2순위 : 수도권(과밀억제권역)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(공고일 현재 본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기업체)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
○ 3순위 : 1순위 협력업체, 기타입주 희망업체

4.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 계획 (변경)

가.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(변경없음)

○ 산업시설구역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

○ 지원시설구역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한 시설 및 건축물

○ 공공시설구역

-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

○ 녹지시설구역

- 산업단지의 미관,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

나. 용도별 구획 평면도 (변경) : 붙임1

5. 업종별 공장의 배치계획 (변경)

<기존>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계	75,581.4	100.0	
-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 -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-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- 전기장비 제조업 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- 식료품제조업 -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 -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 -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-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-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- 기타 제품 제조업 - 전문직별 공사업 - 출판업 -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- 정보서비스업 - 부동산업 - 연구개발업 - 전문 서비스업 - 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-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60,545.7	80.1	
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; 의약품 제외 -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-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-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- 전기장비 제조업 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- 식료품제조업 -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 -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 -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-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-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- 기타 제품 제조업 - 전문직별 공사업 - 출판업 -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- 정보서비스업 - 부동산업 - 연구개발업 - 전문 서비스업 - 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-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15,035.7	19.9	

<변경>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계	75,582.3	100.0	
-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 -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-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- 전기장비 제조업 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- 식료품제조업 -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 -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 -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-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-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- 기타 제품 제조업 - 전문직별 공사업 - 출판업 -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- 정보서비스업 - 부동산업 - 연구개발업 - 전문 서비스업 - 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-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- 가구 제조업	60,546.6	80.1	
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; 의약품 제외 -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-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-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- 전기장비 제조업 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- 식료품제조업 -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 -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 -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-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-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- 기타 제품 제조업 - 전문직별 공사업 - 출판업 -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- 정보서비스업 - 부동산업 - 연구개발업 - 전문 서비스업 - 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-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- 가구 제조업	15,035.7	19.9	

나. 업종별 배치계획도 (변경) : 붙임2

6.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
가. 설치기관 :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(2009. 1. 준공)

나. 운영내용

○ 장비구축 : 특성화, 차별화된 산업화 핵심기반 구축

○ 기술사업화 촉진 : 산학연 역량결집으로 사업화 기술개발 및 전문기업 육성

○ 장비구축 : 특성화·차별화된 산업화 핵심기반 구축

○ 인력양성 : 수요처 발굴지원 및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

Ⅲ. 사후관리계획 (변경)

1. 관리목표 (변경없음)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,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

2. 세부관리계획 (변경없음)

가. 분양용지 관리

○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

○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.

○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분양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

○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, 준공 불가능 인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음
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9조의3(산업용지분할기준)제2항의 규정에서 “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”이라 함은 동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산업용지(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)의 최소 분할면적은 900㎡ 이상으로 한다.

○ 다만, 인접(바로 옆 공장)한 부지에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900㎡ 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 일부를 900㎡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. 이 때 분할용지(900㎡미만)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다.(위반시 입주계약 해지)

나. 환경 관리

○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오·폐수, 대기오염, 소음, 진동 등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다. 안전 관리

○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여 안전관리,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

라. 기반시설 지원

○ 산업단지 내 도로,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

Ⅳ.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(변경없음)

○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산업단지관리 지침」, 환경영향평가, 분양공고문, 분양유의사항,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함.

○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등 : 붙임 도면 게재

Ⅴ. 행정사항(변경없음)

○ 관련도서는 목포시청 지역경제과(☏061-270-8213)에 비치하고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.

붙임 1. 용도별 구획평면도 1부.
2. 업종별 배치계획도 1부.
3. 분양대상 용지 필지별 위치도 1부.
4. 분양대상 용지 필지별 면적 1부.

□ 용도별 구획평면도

<기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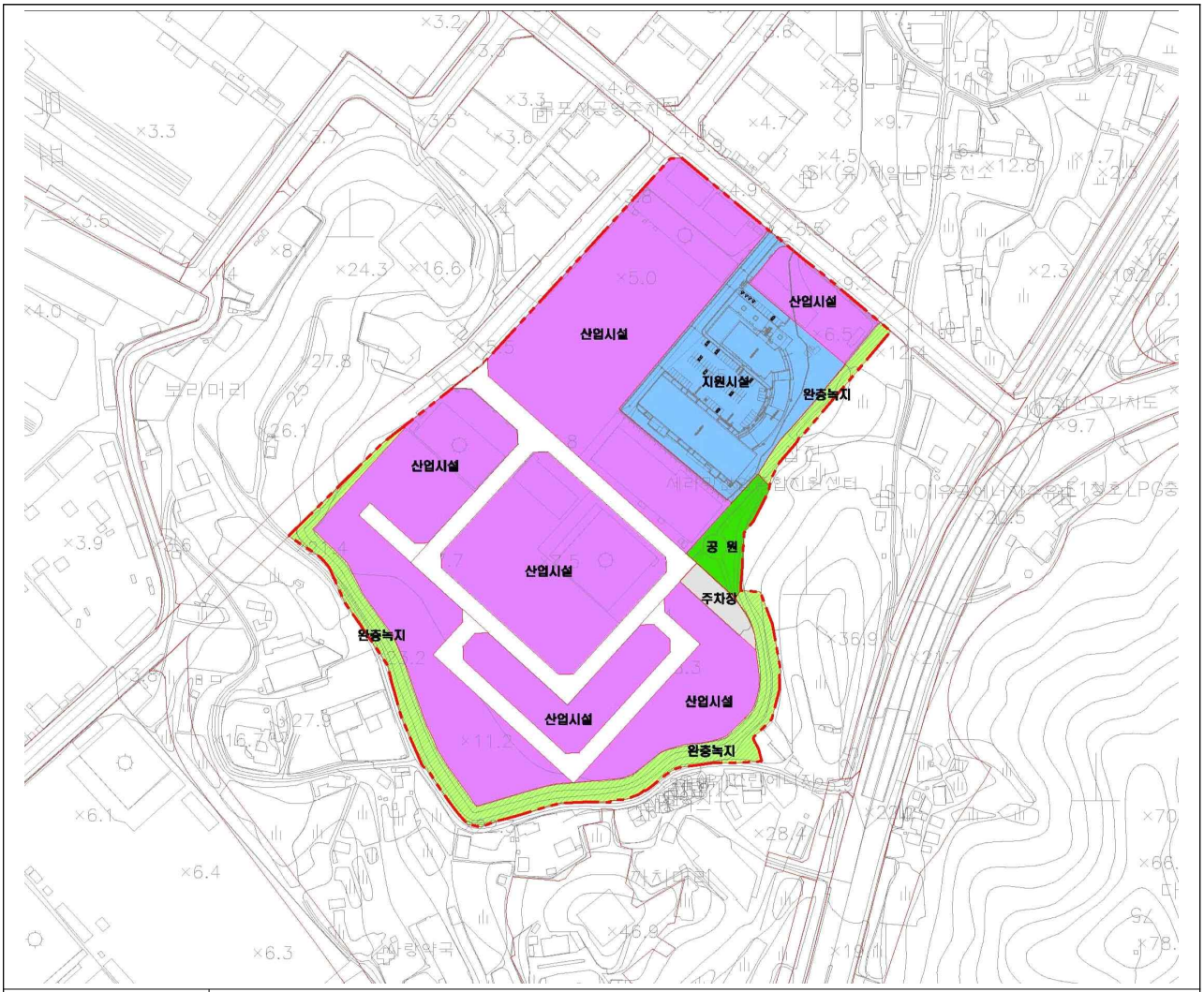

	구분	면적(㎡)	비율(%)
토지이용 계획도	총계	116,361.1	100.0
	산업시설용지	75,581.4	64.9
	지원시설용지	14,529.4	12.5
목포 세라믹 일반산업단지	주차장	1,114.9	1.0
	공원	2,150.4	1.8
	도로	12,320.1	10.6
	완충녹지	10,664.9	9.2

<변경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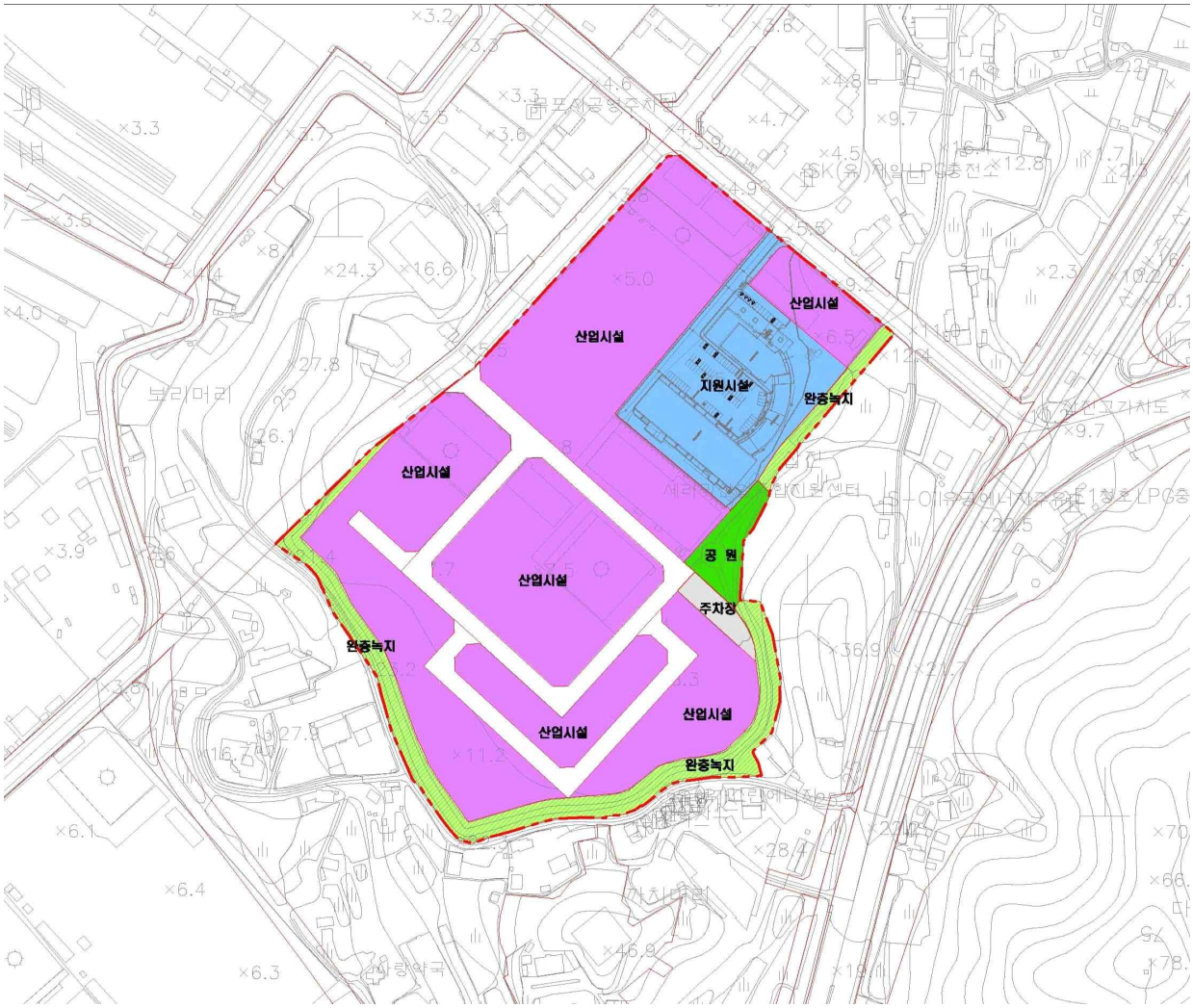

토지이용 계획도

목포 세라믹 일반산업단지

구분		면적(㎡)	비율(%)
총계		116,361.1	100.0
	산업시설용지	75,582.3	64.9
	지원시설용지	14,529.4	12.5
	주차장	1,114.9	1.0
	공원	2,150.4	1.8
	도로	12,319.3	10.6
	완충녹지	10,664.8	9.2

□ 업종별 배치계획도

<기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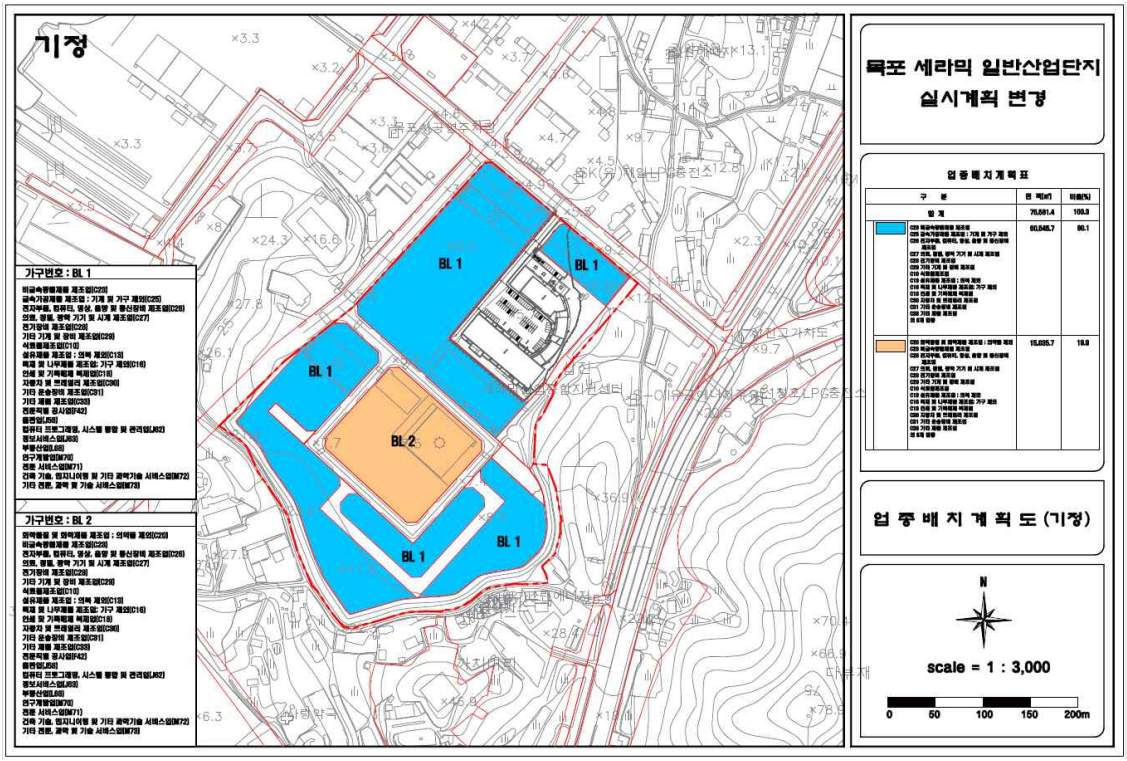

<변경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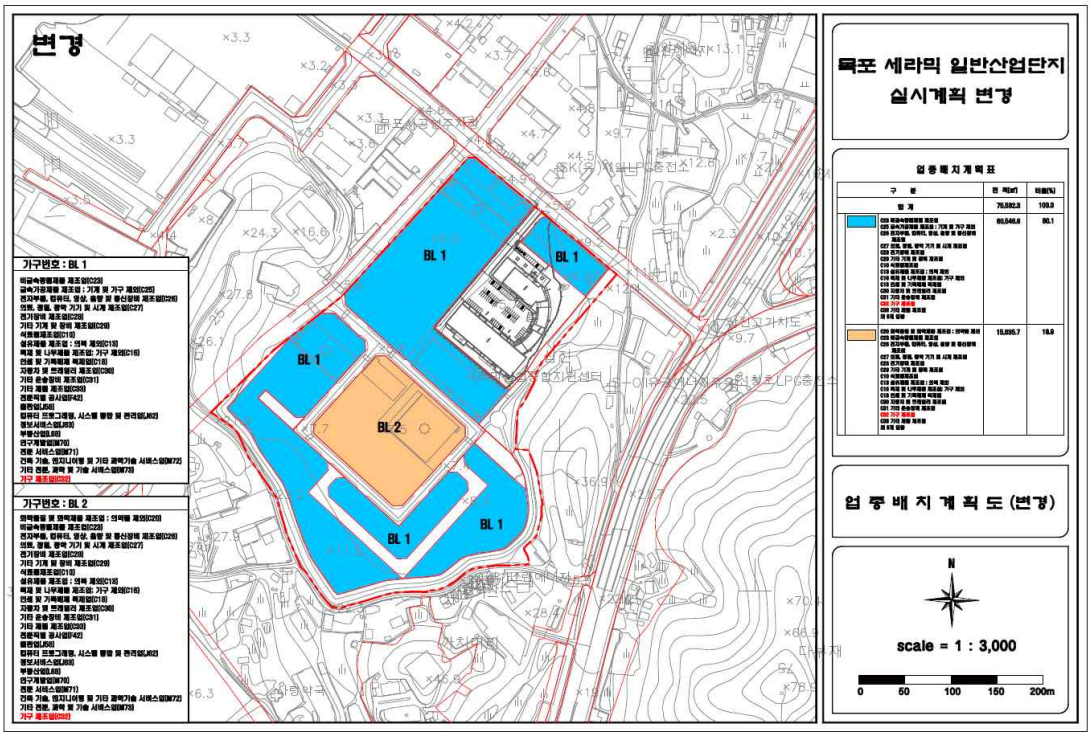

□ 분양대상 용지 필지별 위치도

<기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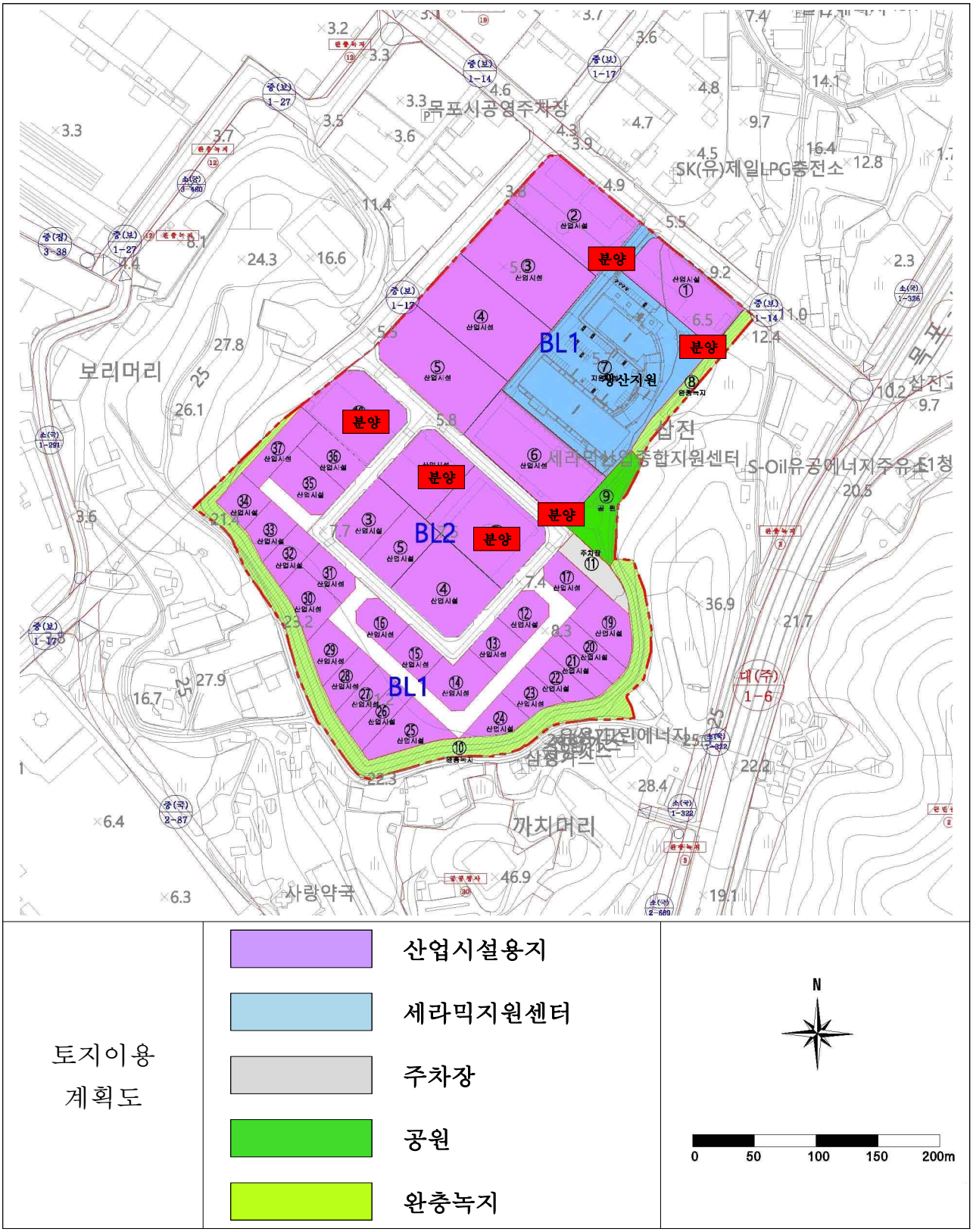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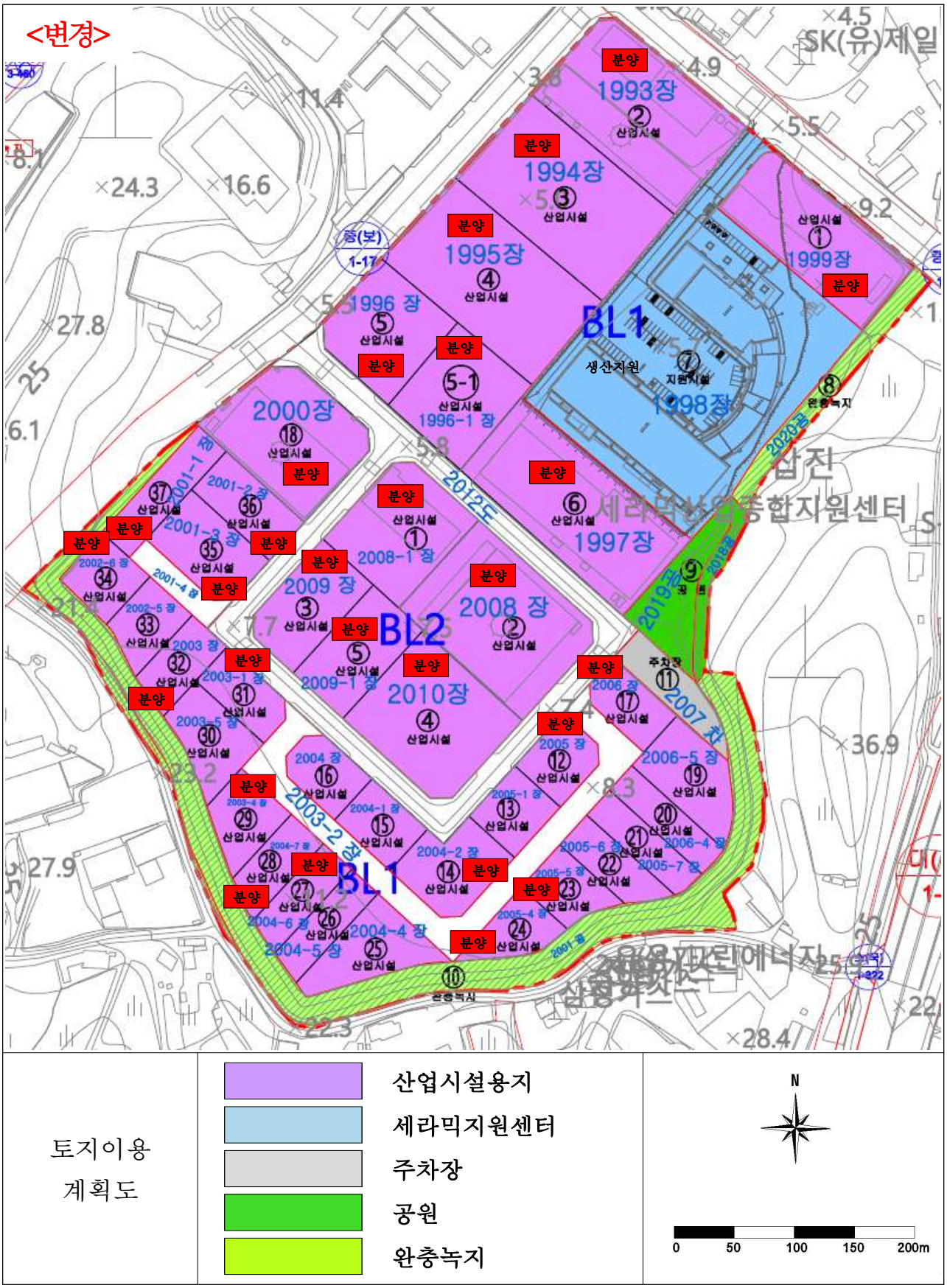
<변경>
SK(유)제일
1993장
1994장
1995장
1996 장
1996-1 장
2000장
1997장
1998장
1999장
2008-1 장
2009 장
2009-1 장
2008 장
2010장
BL1
BL2
생산지원
세라믹지원센터
주차장
공원
완충녹지
2012도
2020광
2019광
2007 차
삼진
토지이용
계획도
산업시설용지
세라믹지원센터
주차장
공원
완충녹지
N
0
50
100
150
200m

□ 분양대상 용지 필지별 면적

<기존>

순번	획지(가필지)		면적(㎡)	예정공급가격(원)	비고
합계	37필지		75,581.4	20,279,698,790	
1	BL1	①	3,645.4	978,119,140	
2	BL1	②	4,891.5	1,312,467,710	
3	BL1	③	5,033.4	1,350,541,750	
4	BL1	④	5,008.5	1,343,860,680	
5	BL1	⑤	5,012.7	1,344,987,610	
6	BL1	⑥	5,130.0	1,376,461,080	
7	BL1	⑫	990.2	265,686,500	
8	BL1	⑬	990.3	265,713,330	
9	BL1	⑭	1,626.9	436,523,300	
10	BL1	⑮	990.0	265,632,840	
11	BL1	⑯	990.2	265,686,500	
12	BL1	⑰	990.4	265,740,160	
13	BL1	⑱	3,516.1	943,425,880	
14	BL1	⑲	1,635.7	438,884,480	
15	BL1	⑳	976.1	261,903,240	
16	BL1	㉑	980.1	262,976,510	
17	BL1	㉒	982.1	263,513,140	
18	BL1	㉓	971.8	260,749,480	
19	BL1	㉔	949.5	254,766,040	
20	BL1	㉕	1,630.1	437,381,910	
21	BL1	㉖	986.0	264,559,570	
22	BL1	㉗	985.4	264,398,580	
23	BL1	㉘	982.0	263,486,310	
24	BL1	㉙	1,106.3	296,837,990	
25	BL1	㉚	1,371.1	367,888,060	
26	BL1	㉛	990.0	265,632,840	
27	BL1	㉜	989.4	265,471,850	
28	BL1	㉝	988.3	265,176,700	
29	BL1	㉞	988.5	265,230,360	
30	BL1	㉟	1,650.6	442,882,390	
31	BL1	㊱	1,290.0	346,127,640	
32	BL1	㊲	1,277.1	342,666,360	
33	BL2	①	2,837.2	761,266,150	
34	BL2	②	4,677.2	1,254,967,590	
35	BL2	③	1,891.5	507,519,710	
36	BL2	④	3,738.8	1,003,179,860	
37	BL2	⑤	1,891.0	507,385,550	

<변경>

순번	획지(가필지)		지번	면적(㎡)	예정공급가격(원)	비고
합계	38필지			75,582.3	21,229,409,850	
1	BL1	①	연산동 1999	3,645.4	978,119,140	분양완료
2	BL1	②	연산동 1993	4,891.5	1,312,467,710	분양완료
3	BL1	③	연산동 1994	5,033.4	1,350,541,750	분양완료
4	BL1	④	연산동 1995	5,008.5	1,343,860,680	분양완료
5	BL1	⑤	연산동 1996	2,506.4	672,507,220	분양완료
6	BL1	⑤-1	연산동 1996-1	2,506.3	672,480,390	분양완료
7	BL1	⑥	연산동 1997	5,130.0	1,376,461,080	분양완료
8	BL1	⑫	연산동 2005	990.3	298,927,490	분양완료
9	BL1	⑬	연산동 2005-1	990.3	298,927,490	
10	BL1	⑭	연산동 2004-2	1,626.9	491,088,710	분양완료
11	BL1	⑮	연산동 2004-1	989.9	298,806,750	
12	BL1	⑯	연산동 2004	990.3	298,927,490	
13	BL1	⑰	연산동 2006	990.5	298,987,860	분양완료
14	BL1	⑱	연산동 2000	3,516.1	943,425,880	분양완료
15	BL1	⑲	연산동 2006-5	1,635.7	493,745,040	
16	BL1	⑳	연산동 2006-4	976.1	294,641,140	
17	BL1	㉑	연산동 2005-7	980.0	295,818,390	
18	BL1	㉒	연산동 2005-6	982.2	296,482,460	
19	BL1	㉓	연산동 2005-5	971.9	293,373,360	분양완료
20	BL1	㉔	연산동 2005-4	949.6	286,641,970	분양완료
21	BL1	㉕	연산동 2004-4	1,630.4	492,145,200	
22	BL1	㉖	연산동 2004-5	985.7	297,538,960	
23	BL1	㉗	연산동 2004-6	985.6	297,508,780	분양완료
24	BL1	㉘	연산동 2004-7	982.2	296,482,460	분양완료
25	BL1	㉙	연산동 2003-4	1,106.1	333,882,360	분양완료
26	BL1	㉚	연산동 2003-5	1,371.2	413,904,250	
27	BL1	㉛	연산동 2003-1	990.1	298,867,120	분양완료
28	BL1	㉜	연산동 2003	989.4	298,655,830	분양완료
29	BL1	㉝	연산동 2002-5	988.5	298,384,150	
30	BL1	㉞	연산동 2002-6	988.3	298,323,780	분양완료
31	BL1	㉟	연산동 2001-3	1,650.8	498,303,050	분양완료
32	BL1	㊱	연산동 2001-2	1,289.9	389,363,400	분양완료
33	BL1	㊲	연산동 2001-1	1,277.1	385,499,650	분양완료
34	BL2	①	연산동 2008-1	2,837.2	761,266,150	분양완료
35	BL2	②	연산동 2008	4,677.2	1,254,967,590	분양완료
36	BL2	③	연산동 2009	1,891.3	507,519,710	분양완료
37	BL2	④	연산동 2010	3,738.8	1,003,179,860	분양완료
38	BL2	⑤	연산동 2009-1	1,891.2	507,385,550	분양완료